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천시식정보타운 S1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시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식회사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시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행복주택
  - 나. 사 업 면 적 : 20,934.00㎡
  - 다. 대 지 면 적 : 20,934.00㎡
  - 라. 연 면 적 : 51,082.85㎡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46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444,438천원 (주택도시기금 33,611,5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과천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60항부터 제68항까지 9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5장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6항, 제19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호, 2017. 3.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 목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